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475호(號)

1930(昭和 5)년 조선총독부고시 제74호(號)(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 중(中) 1931(昭和 6)년 1월 11일부터 아래[左]와 같이 개정(改正)함.

1930(昭和 5)년 12월 8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자작(子爵)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제5조(條)제3호(號) 가의 행(行) 괄호서(括弧書) 중(中) 「광궤선(廣軌線)의 화차(貨車) 1차(車)」를 「광궤선발(廣軌線發)의 경우는 광궤선(廣軌線)의 화차(貨車) 1차(車), 협궤선발(狹軌線發)의 경우는 광궤선(廣軌線)의 표준화차(標準貨車) 1차(車)」로 개정(改正)함.

제6조(條) 중(中) 시멘트(cement) 170kg(甁)의 행(行) 1톤(噸)당(當) 개수란(箇數欄) 「5, 5」를 「5, 6」으로, 동(同) 시멘트(cement) 4분(分)의 1통(樽)의 행(行) 1개(箇)의 톤수란(噸數欄) 「44」를 「43」으로, 1톤(噸)당(當) 개수란(箇數欄) 「22, 8」을 「23, 3」으로 개정(改正)함.

제10조(條)제1항(項) 중(中) 「하수인(荷手人) 및 착역(著驛)을 동일(同一)하게 함」을 「하수인(荷手人), 착역(著驛) 및 운송조건(運送條件)을 동일(同一)하게 함」으로 개정(改正)함.

제12조(條)제1항(項)제10호(號) 중(中) 「가격(價格) 40원(圓)을 초과(超過)한 경우(境遇)」를 「가격(價格) 40원(圓)의 비율(比率)을 초과(超過)한 경우(境遇)」로 개정(改正)함.

제25조(條)제1항(項)제1호(號) 아래표[左表] 중(中) 「동(同) 3.5m 미만(未滿)의 경우 2.6m」 및 「동(同) 4.0m 미만(未滿)의 경우 2.4m」를 삭제(削除)하고, 동(同) 제2호(號) 중(中) 「4m」를 「3m」로 개정(改正)하며, 동(同) 제3호(號)의 말미(末尾)에 아래[左]의 단서(但書)를 추가(追加)함.

단(但) 화물(貨物)이 하중부담차(荷重負擔車)의 차체(車體)에서 전방(前方) 또는 후방(後方)으로 돌출(突出)한 경우(境遇)는 그 돌출부(突出部)의 하중(荷重)을 부담(負擔)하는 화차(貨車: 표기하중[標記荷重] 50톤[噸] 차[車]를 제[除]함)에 적재(積載)한 화물(貨物)의 중량(重量)은 아래표[左表]의 제한(制限)을 초과(超過)하지 아니할 것.

돌출부(突出部)의 하중(荷重)을 부담(負擔)하는 화차(貨車)	전(前) 또는 후(後)에 있어서 돌출부분(突出部分) 1.0m 미만(未滿)인 경우	동(同) 1.5m 미만(未滿)인 경우	동(同) 2.0m 미만(未滿)인 경우	동(同) 3.0m 미만(未滿)인 경우
표기하중(標記荷重) 22톤(噸)의 화차(貨車)		22톤(噸)	19톤(噸)	18톤(噸)
표기하중(標記荷重) 30톤(噸)의 화차(貨車)		30톤(噸)	30톤(噸)	28톤(噸)

제27조(條)제2호(號) 및 동(同)제3호(號) 및 제28조(條) 중(中) 「소화물급(小貨物扱)」을 「소화물급(小貨物扱) 또는 톤급(噸扱)」으로 개정(改正)함.

제60조(條) 중(中) 「제40조(條)에 의(依)한 것 외(外)」를 삭제(削除)함.

별표(別表) 화물요금표(貨物料金表) 중(中) (2)화물보관료(貨物保管料)의 항(項) 및 동(同)

(3)화물유치료(貨物留置料)의 항(項) 계산방식(병[丙])란(欄) 1요금계산중량(料金計算重量) 중(中) 각(各) 본문(本文) 말미(末尾)에 아래[左]의 단서(但書)를 추가(追加)함.

단(但) 소화물급(小貨物扱)은 100kg(甧)마다의 계산(計算)으로 하고, 100kg(甧) 미만(未滿)의 단수(端數)는 100kg(甧)로 절상(切上)함.

별표(別表) 화물요금표(貨物料金表) 중(中) (8)지도수수료(指圖手數料)의 항(項) 요금률(料金率)(을[乙])란(欄) C차급화물(車扱貨物) 중(中) 「기타(其他) 동(同) 4,000」을 「기타(其他) 동일협궤선(同一挾軌線) 내(內) 발착(發著)의 경우 동(同) 2,000

기타(其他)

동(同) 4,000」으로 개정(改正)함.